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2019.12.4.(수) 10:00]

검 토 보 고 서



북지도시위원회

목 차

1.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1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 전문위원 최종익 〉

1. 안 건 명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9-163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 다. 제출일자 : 2019년 11월 15일
- 라. 회부일자 : 2019년 11월 18일

3. 제안이유

장학재단 이사회 임원인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일원화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

4. 주요내용

- 가. 이사장의 임기 변경(안 제11조제5항)
 - 이사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임원 등) 및 제6조(이사회)
- 나. 입법예고 : 2019. 10. 10. ~ 10. 30. (제출된 의견 없음)
- 다. 예산조치 : 불필요

6. 검토의견

가. 제안경위 및 개정취지

- 동 개정조례안은 마포구청장으로부터 2019.11.15. 제출되어, 의안 번호 제163호로 2019.11.18. 우리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
- 개정취지는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일원화하여 이사회의 본래 기능인 재단의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등 재단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였음.

나. 주요 검토의견

(1) 조례개정 필요성 검토

- 본 건은 마포구 지역 인재를 발굴, 육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2.12.31. 제정·시행되어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개정이 되었음. 또한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의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2013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하게 됨.

〈표 1〉 설립당시 기본재산 목록

(2013. 12. 20. 기준)

재산명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 금	1계좌	8,000,000,000	설립허가일 현재 (2013. 12. 20.)

〈표 2〉 현재의 기본재산 목록

(2019. 6. 17. 기준)

재산명	종별 (소재지,지번,지목)	수량	평가액(원)	비고
현 금	정기예금	3	7,750,320,059	
채권 등	NH농협손해보험	1	1,999,999,941	
	효성캐피탈 215	1	1,249,680,000	
주식				
기타상품				
토지				
건물				
합 계		5	11,000,000,000	

(표1,2 출처: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홈페이지)

- 아울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에¹⁾ 의하면 이사회는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그간의 임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규정²⁾과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단,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연임할 수 있다.’라는 재단법인 마포인재육성장학재단 정관 규정³⁾에 따라 이사회에서는 ‘공익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등 이사회의 주요기능을 수행하여 왔으나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하여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재단의 책임운영 강화**를 위하여 그 필요성이 있다 하겠음.
- 따라서, 안 제11조 제5항의 임원 중 이사장의 임기와 이사의 임기를 동일하게 맞추는 것으로 동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는 적절하다고 사료됨.

(2) 조례조문 주요내용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안 제11조 제5항에서 ‘**이사장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이는 상위법인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⁴⁾의 규정에도 부합하고 같은 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한 바, 전체적 조례 체계나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됨.

1) 제6조(이사회) ③ 이사장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전문개정 2008. 3. 14.]

2) 제11조(임원) ⑤ 이사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9.24>

3) 제19조(임원의 임기와 해임) ① 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단, 당연직 이사는 제외한다), 연임할 수 있다.

4) 제5조(임원 등) ③ 이사와 감사의 임기는 정관으로 정하되,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